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
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36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억원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근 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
 -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조
 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4조

나. 출연대상: 서울신용보증재단

다. 출연내용: 관내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

(출연금의 15배수 한도 내에서 업체당 2천만 원 이내 신용보증 지원)

라. 출연금액: 금900,000천원(보증한도: 112.5억원)

마. 출연시기: 4월 중

4. 참고사항

가. 특별신용보증 출연현황

- 1차 출연: 2011. 3. 2. (3억원, 보증한도 30억원)
- 2차 출연: 2015. 3. 10. (2억원, 보증한도 20억원)
- 3차 출연: 2019. 7. 23. (1억원, 보증한도 15억원)
- 4차 출연: 2020. 10. 30. (2억원, 보증한도 30억원¹⁾)

나. 특별신용보증 지원현황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건수	25	14	11	79
금액	794,750	527,250	426,500	3,127,000

1) 1차, 2차 출연 - 한도 회복형(보증한도 출연금의 10배),

3차, 4차 출연 - 한도 소멸형(보증한도 출연금의 15배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서울신용보증재단”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,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참고자료 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 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 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 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- 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-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9억원이며,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·구 협력 사업으로 총 200억원의 무이자 대출(업체당 2천만원 이내)을 지원하게 되고, 우리구의 출연금은(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이 함께 출연²⁾) 무이자 대출을 위한 특별신용보증(보증보험료) 지원을 위해 사용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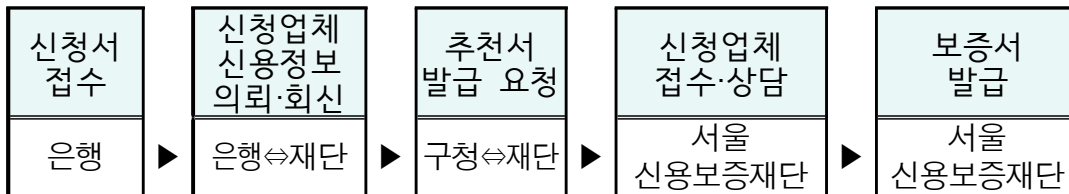
2) 강서구 9억원, 우리은행 5억원, 하나은행 2억원으로 총 16억원 출연 (총 보증한도 200억원)

- 검토결과,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강서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,
- 소멸되는 특별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금인 만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여력과 향후 융자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금확충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참고

특별보증 지원개요

- ▶ 보증규모 : 200억원
 - 시·구 협력 민생대책 무이자 용자지원용 특별보증 필요
 - 보증한도 200억(보증재원 16억, 보증배수 12.5배, 한도소멸형)
 - 보증재원: 강서구청 9억, 우리은행 5억, 하나은행 2억 출연
- ▶ 보증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
- ▶ 지원시기 : 7월(예정)
- ▶ 지원대상 : 강서구 소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 - ※ 보증제한 : 주점, 부동산업, 금융업, 사치향락성 업종 등 용자제한 업종
- ▶ 지원방법 : 구청장 추천에 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
- ▶ 지원절차



- ▶ 보증료율 : 용자금액의 0.5%
- ▶ 보증비율 : 용자금액의 100%

※참고자료

○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융 보증한도 현황

(2021. 3. 기준, 단위: 백만원)

구분	출연금	① 총 보증한도	② 한도보증누계					③ 여유액 (①-②)
			②신용보증액 (a-b+c-d)	보증실행 (a)	보증해지 (b)	보증사고 (c)	사고정상화 (d)	
한도회복형	500	(출연금×10) 5,000	5,023	8,572	4,698	1,309	160	-23
한도소멸형	300	(출연금×15) 4,500	1,299					3,201

- ▶ 보증사고 : 원리금 연체, 당좌부도, 신용불량 정보대상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³⁾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3. 기업의 출연금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
□ 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9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·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서울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설립·운영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3) 제1호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제2호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
2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(서울신용보증재단 등)
3.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
②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